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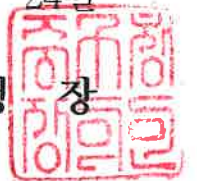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A0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환경부, 2019.4.8.) 및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필요에 따라 우리 구 규칙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판매이윤 인상 8% → 9%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
3396-5486, 팩스 : 02-3396-8754, email : myjworld@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 (제5조 관련)

1. 일반가정(단독주택)

(단위 : 원)

구 분	2017. 1. 1. ~ 2020.12.31.			2021.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¹⁾ (92%)	판매수수료 ²⁾ (8%)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1%)	판매수수료 (9%)
1ℓ	100	92	8	100	91	9
2ℓ	200	184	16	200	182	18
3ℓ	300	276	24	300	273	27
5ℓ	500	460	40	500	455	45

2. 일반가정(공동주택)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00%)	판매수수료 (0%)
120ℓ	8,400	8,400	0	12,000	12,000	0
200ℓ	14,000	14,000	0	20,000	20,000	0

3. 소형음식점(사업장)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 1. 1. ~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	판매수수료 (6%)	판매가 (100%)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94%)	판매수수료 (6%)
5ℓ	500	470	30	700	658	42
10ℓ	1,000	940	60	1,400	1,316	84
20ℓ	2,000	1,880	120	2,800	2,632	168
25ℓ	2,500	2,350	150	3,500	3,290	210
40ℓ	4,000	3,760	240	5,600	5,264	336
60ℓ	6,000	5,640	360	8,400	7,896	504
120ℓ	12,000	11,280	720	16,800	15,792	1,008

※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판매수수료는 판매가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조례 제9조의1)

2) 판매수수료 :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자 수입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